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9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시 사용료 부과대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로 한정하여 일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고, 이의신청 결정·통지 기간 마련 및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 설정 등 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체계를 개선하여 군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안 제2조)

1) 공공하수도로부터 50미터 이내

⇒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나.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자로 한정 (안 제15조)

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기간 등 마련(안 제28조제2항~제4항)

1)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라 60일 이내 통지

2) 이의신청 절차 등은 규칙으로 위임

라. 사용료등에 대한 가산금 규정 정비(안 제29조)

마. 소멸시효를 정함(안 제30조)

1) 미납 사용료등의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

2) 과오납 사용료등의 채무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

바.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정비 및 신설(안 별표 7)

1)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

2)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 대상자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15조·제65조, 「지방자치법」 제140조, 「민법」 제163조, 「지방재정법」 제8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8. 28.~9.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국민권익위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2019. 4. 29.) 전부 반영함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0미터 내로 하여야 한다.”를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수처리구역을”을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을 “공공하수도 사용료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가산금) ① 군수는 사용료등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 x 2/100 x 12 개월 x 연체일수/365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의 100분의 2

제30조를 삭제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소멸시효) 사용료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미납된 사용료등: 3년
2. 과오납된 사용료등: 5년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면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미터 내로 하여야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면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③ (생 략)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감면)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6조(감면)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4조부터 제97조, 제199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가산금)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제29조(가산금) ① 군수는 사용료등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x2/100x12개월x연체일수/365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의 100분의 2
제30조(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삭 제>
<신 설>	제30조(소멸시효) 사용료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납된 사용료등: 3년 2. 과오납된 사용료등: 5년

[별표 7]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제26조제1항)

감 면 대 상	감 면 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의 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	100퍼센트

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50퍼센트	
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	20퍼센트	
아.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는 지역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자	1년차	30퍼센트
	2년차	20퍼센트
	3년차	10퍼센트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소재 사업장	50퍼센트	

주) 감면비율은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비고

1. 가목에서 사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음
2. 가목·나목·다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가정용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실제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함. 다만, 1개의 계량기로 부과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아목의 경우 지방상수도로 전환 후 2년 이내에 급수신청의 경우에 한정하며, 4년차부터는 정상요금을 적용함
4. 자목에 따른 감면기간은 3개월.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